

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

최신 임상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를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 항목별 주요 변경사항 〉

평가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배액관 보유	· 배액관이란 상처 부위, 수술 및 시술 부위 등의 배액·감압을 위해 가지고 있는 관	· 배액관이란 상처 부위, 수술 및 시술 부위 등의 배액·감압을 위해 가지고 있는 관 또는 주머니 - wound bag 평가 가능	(p.32~36)
	· 배액 목적의 PEG 평가 불가	· NPO 상황에서 PEG를 통해 배액만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평가 가능	
수술	· 복부 절개로 접근한 척추 수술 평가 가능	· 복부(옆구리) 절개 통한 척추 수술 평가 불가 - 복막 절개를 시행하는 수술만 인정	(p.87)

〈 다빈도 질의 추가 〉

평가항목	다빈도 질의	비고
정맥 내 투약	Q10. placebo 처방으로 정맥 내 투약 한 경우 평가 불가	(p.30)
배변·배뇨	Q4. 장루 유지 환자의 주위 피부상태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경우 평가 불가	(p.67)
	Q8. 배변·배뇨 전후 옷 벗기, 옷 입기 도움 제공 시 ‘옷 입기’ 항목으로 중복평가 불가, ‘배변·배뇨’로만 평가	(p.68)
낙상 발생 장소	Q5. 외박(0~24시) 중 발생한 낙상은 신고하지 않음	(p.112)
욕창 단계	Q11. skin graft 시행 환자는 그 다음 날부터 욕창 단계 ‘0’으로 입력	(p.113)

💡 '26.7.16.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

💡 간호필요도 평가 매뉴얼(2026.7.) 주요 변경사항 및 추가 질의 필수 확인

- 영양기관정보마당, 사이버연수원, 온라인 커뮤니티 ‘공지사항’ 게시 ... PDF파일(7.1.)

※ 영양기관정보마당 > 간호간병 > 사업신고 > 정기신고 >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> ‘참고자료 다운로드’ 에서도 확인 가능

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견을 기반으로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의 지속적인 검토·보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, 제공기관 평가 담당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☎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033-736-4350~2